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2. 18 선고 2024가단1173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피고B

변론 종결2024. 11. 6.

판결 선고2024. 12. 18.

주 문

-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0. 4. 2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23. 6. 27. 접수 제5729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천안시동남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보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보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소외 주식회사 D는 2018.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외 C(E생)을 상대로 '8,642,576원 및 그 중 4,5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2018차전1336295), 위 지급명령은 2018. 11. 21. 송달되어 같은 해 12. 6.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1. 5. 26. 소외 주식회사 D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발령받았고, 2021. 1. 29. C에게 송달되었다.

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F는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4. 2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G, 자녀들인 H, C, I, J, 피고, K, L이 있고(각 자녀들 상속지분은 2/17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23.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와 접수 제57298호로 2010. 4.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다. 소외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망인 사후 상속인들은 각자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는데, C 또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7지분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하여 피고에게 이전해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인 위 소외인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모두 추정된다.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7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7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주장 및 판단

피고는 2023. 6. 30. 자신의 남편 M 명의로 C 대신 소외 N에 대한 채무 4천만 원을 변제해주는 대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7지분을 이전받은 것으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C이 상속받게 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7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배제하는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주장 채무 변제행위는 C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7지분 이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C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으면 그의 재산상태를 어느 정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혁재

별지